

의안번호	2200217
의 퇴 인	송석준의원
회 답 일	2024.7.11.
추 계 번호	24B058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수도권정비 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함(제1항) 8. 상생협력지구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20조의2 신설 (상생협력지 구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지정 대상 상생협력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제1항) 1.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인접지역	의무규정
3	안 제20조의3 신설 (상생협력계 획의 수립 등)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상생협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생협력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1항) 1.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과 상생협력방향 2. 상생협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사업기간 4.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및 시행방법 5.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상생협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안 제20조의5 신설 (상생협력지구 지정으로 인한 법적용 특례)	상생협력지구에서는 상생협력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함(제1항)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시설이 설치제한. 다만, 대학의 설치에는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된다. 2. 제11조에 따른 중전 대치에 관한 조치 3.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4.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 5.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6.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 8.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의무규정
	안 제20조의6 신설 (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및 사용)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함(제1항)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상생협력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제1항) 1.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기구의 설치 및 운영 2.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3.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지역의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21조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설 치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8.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9.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안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 미대상 : 기존 정비계획 수립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¹⁾ 예산 내에서 처리가능
2	안 제20조의2 신설(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20조의3 신설(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등)	
4	안 제20조의5 신설(상생협력지구 지정으로 인한 법 적용 특례)	
5	안 제20조의6 신설(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및 사용)	

1)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2명(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차관 등)과 위촉 위원 7명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촉 위원 7명에게 안전검토비를 포함하여 1일 3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1회 개최 시 300만원(=7명×1회×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1명당 참석수당 15만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2. 상세사유

□ (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개정안에 따라 상생협력지구가 지정되고,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지구를 조성하려는 시·도에 관한 정보, 해당 시·도의 상생협력계획수립일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비를 추산할 수 있음
- 그런데, 상생협력지구가 지정되지 않아 해당 지구의 사업자, 건축비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이에 따라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규모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
- 참고로, 개정안 제20조의2의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1] 개정안에 따른 상생협력지구 지정 가능지역: 안 제20조의2제1호~6호

대상지역		세부지역	총면적(km ²)	중복지역 제외면적(km ²)
제1호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 량관리계획 수립·시행지역		(전체)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일부)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3,830	3,830
제2호 특수 상황 지역	제4호 접경지역	강화, 용진,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3,712	3,712
	개발대상 도서	인천 중구(2), 서구(1), 강화(8), 용진(21), 경기 안산(2), 화성(2) 등 36개 도서	266	14 (접경지역 제외)
제3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인천 부평구 일부 경기 성남, 고양시, 의정부시 등 14개 시·군 일부	3,501	1,268 (특수상황지 역 제외)
제5호 기존 공업지역		수도권 내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 전체	221.5	211.5 (오충제 지역 제외)
제6호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총 119개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7.4	7.4
합계			11,537.8	9,042.9

- (안 제20조의5 신설) 개정안은 상생협력지구에서는 상생협력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 그런데, 상생협력계획 및 규제 특례 대상의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과밀부담금이나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분제 시 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안 제20조의6 신설) 개정안은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정부가 출자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소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이에 대한 재정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계획, 기금의 조성 규모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 설치계획, 연구개발 사업계획, 주민복지 사업계획, 교통 및 거주여건 향상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규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런데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출연계획, 기금 재원을 통한 상생협력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 이어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지원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I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